

청소년증을 소개합니다!

발급대상 : 만 9세 이상 만 19세 미만

용도

- 공적 신분증
 - 대학수학능력시험·검정고시·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과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
- 청소년우대 증표
 - 교통수단, 문화시설,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증표로 제시



성인에게는 주민등록증, 청소년에게는 '청소년증'

- 공적신분증이 필요하거나 학생증이 없으면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세요!
* 학생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공적 신분증으로 이용이 어려움
- 청소년증을 제시하는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요금을 적용해주세요!

신청 방법은?



신청인 :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

신청장소 :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

주의사항 -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.
-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.